

◎농촌진흥청공고 제2023-319호

「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06일

농촌진흥청장

「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484호, 2023. 6. 20. 공포, 2024. 6. 21. 시행)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,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정보제공 실적 등 평가 기준 내용을 정함(안 제3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54875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,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

- 전자우편 : 007zero@korea.kr

- 팩스 : (063) 238-1762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(전화 (063) 238-0453~0454, 팩스 (063) 238-17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